

2023년 규제특례기업 실증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

구분	주요내용	비고
추진절차	공고/접수 → 서류검토 → 선정평가 → 협약체결 → 서울시지원금 지급 → 사업수행 → 최종평가 → 사업비 정산 → 사후관리	주관기관=사업신청 기업
평가위원회	- 서울규제혁신지원단 등 외부 전문가 7인 이내 구성 - 평가위원은 사업참여자나 사제관계이거나 친족관계,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참여 불가	비밀유지의무 적용
선정평가	- 평가대상: 자격요건 등 서류검토 통과 필요 - 평가방법: 서류평가/발표평가, 대면평가/서면평가 - 평가결과: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경우 순위부여	
최종평가	- 평가결과: 종합평점 70점 이상 '성공', 70점 미만 '실패' - '실패'인 경우 성실 수행 여부, 실패의 귀책사유,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	별도로 정한 최종보고서 등 제출
협약체결 및 변경	- 주관기관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시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(지급)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서류 제출 -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제선정 취소 - 협약, 실증계획, 사업비 사용계획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 SBA(규제개혁지원팀) 변경 요청	별도로 정한 협약서 등 제출
협약해약	-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- 주관기관의 사업 참여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- 기타 중대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
사업비 산정	- 사업비는 서울시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정 - 기업부담금은 서울시지원금의 20% 이상 현금으로 입금 - [별표] 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준수	사업비관리계좌는 주관기관이 지정
사업비 사용·관리	- 서울시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주관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 지급 -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협약기간 내 사용하여야 하며,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- [별표]에 따라 법인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사업비 사용 원칙 -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사업비의 사용은 불인정비목 간 50% 이내에서 자유롭게 변경하되, 비목별 50% 이상 변경 시 SBA(규제개혁지원팀) 사전 승인 필요 - 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(계산서),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존	(사업비통장 요건) 1. 수시 입출금 가능 2. 원금 보장 3. 담보설정 불가
사업비 정산	- SBA(규제개혁지원팀)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관리·감독 -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 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하며, 정해진 기한 내 증빙자료 미제출 시 사용금액 불인정	회계법인은 SBA가 지정

사업비 부적정 사례	- 사업목적, [별표]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-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임의로 사용한 경우 - 사업비 사용 절차 및 기준,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 - 협약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된 경우. 단, 수수료는 인정함 -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성과품, 증빙자료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- 부가가치세, 관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- 사업공고 시 명시한 지원불가 항목 등	
사업비 반납·환수	- 사업수행 중도 포기, 부도, 폐업 등은 서울시지원금 전액 반납 - SBA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반납금액 입금 - SBA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 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행사	입금계좌는 SBA가 지정
성과관리	- 유·무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며 성과 확산 - 협약기간 종료 후 최대 3년간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	

[별표] 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

비목	사용용도 및 산정기준
실증 비용	○ 실증비용은 사업비의 70% 이상 계상 ○ 주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 인력의 외부인건비(최대 3,000만원 이내 계상) -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○ 제품·서비스 제작비 - 제작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- 외부기관 의뢰를 통한 제품·서비스의 설계, 개발, 제작 등 - 제품·서비스의 설치, 유지보수, 개선,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○ 국내외 규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시험분석, 성능검증, 심사비 등 ○ 데이터분석비: 외부기관 의뢰를 통한 데이터 확보, 분석 등 ○ H/W 및 S/W 구입·임차·사용 등(실증공간 임차 포함) ○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(최대 1,000만원 이내 계상)
마케팅 비용	○ 사업화 전략수립, 시장조사 등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비용 -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○ 전문가활용비: 참여 인력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한해 원고료, 여비 포함하여 산정 - 100만원 초과 시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○ 홍보물(콘텐츠 포함) 제작, CI·BI 개발 등은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○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광고,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참가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(출장비, 항공료 등 사용 불가) ○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 및 홍보활동 등 투자유치 시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
기타비용	○ 회계감사수수료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 실 소요경비 계상